

- 면 적 : 총 57,956㎡ (17,532평)
 - 주차면적 : 47,442㎡ (14,351평) - 81.8%
 - 건축바닥면적 : 2,491㎡ (754평) - 4.3%
 - 녹지면적 : 8,023㎡ (2,427평) - 13.9%
- 주요시설
 - 주 차 장 : 47,442㎡ (14,351평) - 주차면수 444대
 - 공동 사무실 : 1,671㎡ (505평)
 - 관리 사무실 : 68㎡ (21평)
 - 차량정비시설 : 1,042㎡(315평) - 동시 8대 입고정비
 - 세차시설 : 702㎡(212평) - 세차기 2대
 - 주유시설 : 157㎡(56평) - 주유기 6대
 - 경비시설 : 23㎡(7평)
 - CNG동 : 170㎡(52평)
 - 전기시설(수전용량 300KVA, 22.9KV, 발전기75KW1대, 수배전반5면, 방송시설 1set, 화재경비시설 등)
 - 기계설비(보일러5대, 냉온수기1대, 에어컨11대, 팬코일유니트51대, 원적외선난방11대 등)
 - 폐수처리시설 1식, 버스자동세차기4대 등

□ 추진경위

- '97. 5. 21 :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결정
- '98. 9. 14 :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승인(건설교통부)
- '99. 11. 5 :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
- '99. 12. 7 :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
- '00. 2. 21 : 실시설계 용역체결
- '00. 7. 25 : 토지매입 협의보상 및 수용체결
- '01. 6. 25 : 공사착공
- '02. 5. 29 ~ 6. 5 : 입주희망 업체 신청
- '02. 10. : 시의회 승인

□ 위탁운영계획

- 위탁운영기관 :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
 - 은평권역 및 강동권역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를 안전적으로 운영해 오는 한편 우리시 교통관련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
- 위탁업무 : 시설물의 사용계약, 사용계약의 취소, 사용료의 부과·징수, 시설물의 관리,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
- 운영방법 : 직영 및 임대관리 병행

직접운영	임대관리
건물 및 시설관리 경비, 청소, 주차관리	- 입주업체계약 주유시설, 세차시설, 정비고, 주차장, 공동 사무실

- 운영체계 : 24시간 연중운영

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20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3년 1월 29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I. 주 문

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·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

II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,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. 이에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24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3년 1월 29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I. 주 문

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반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, 서울특별시의회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

II. 제안이유

- 민족의 화해,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간 제반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, 경평축구대회의 부활 등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게 될 사업에 대한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의회에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22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3년 1월 29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I. 주 문

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

II. 제안이유

-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인력의 활용 극대화 및 각종 시설의 확충 등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의회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